

G-Welfare Weekly Report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1. 복지부, 지자체 새 복지제도 전년 4월까지 협의 의무화

01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발표(16.1.28.)
 - 사회보장 협의제도가 도입된 지 3년(13.1.27시행), 협의건수 급증, 협의유형 다양화, 이행력 확보수단 마련 등을 위해 운영지침을 개정

사회보장법 (제26조 제②항)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주요 내용은 사업성격에 따른 협의기간 조정, 지자체 예산안 제출 의무화 등이며 이번 지침은 '16년도에 협의되는 사업부터 적용

구분	주요 내용
협의대상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야 명시 ①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은 제도 ② 사회보장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 또는 조례안 자체 ③ 대상자 규모/예산 등의 자연증가 ④ 기존사업의 폐지 ⑤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규정된 시설 등의 개폐 및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지원 ⑥ 사회보장급여 제공과 관련없는 조직, 기관의 설치 및 운영
협의 시점/협의 기간	법정기한 (4월 30일) 내 협의요청서 제출 의무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4월말 이후에도 협의요청이 가능하나 지자체가 사유를 소명하고 사업 시행시기를 유예 협의 기간은 제도 및 사업의 성격에 따라 최대 6개월의 협의 진행 가능 자주 협의 대상이 되는 안건의 협의 기간은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단축
기 타	지자체는 연말까지 익년도 사업의 예산안 편성의결현황 자료를 의무 제출

02 경기도에의 시사점

- 이번 지침 변경은 지자체의 복지제도 신설에 대해 정부의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
 - 지난해 말 정부와의 협의 없는 복지제도 신설 시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것에 이어
 - 지자체가 다음 해 사업의 예산안 편성·의결 현황을 연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정부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의도
- 지방정부도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동등한 주체인 만큼 중앙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방정부와 협의하는 조항을 사회보장기본법에 추가하도록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협조체계 구축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15.12.1.)

2. 장애등급제, 복지 욕구 중심으로 개편

01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결과, 서비스욕구 파악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상당부분 해소하는 사업 효과가 있다고 발표('16.1.26.)
- 장애등급제 개편은 국정과제의 하나로 의학적 장애등급(6등급)을 대체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판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 의학적 장애등급에 바탕을 둔 장애등록제 '88년 도입되어 장애인복지시책에 활용되고 있으나
 - 복지욕구의 다양화와 사회적 환경 변화 등으로, 의학적 장애등급만으로 적격성 판단이 어려운 분야(예 : 활동지원)의 급여자격 제한 기준으로 작용되는 문제점이 발생
- 장애등급제 개편은 기존 공급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장애인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개편 후에는 장애등록 신청 또는 서비스 신청 시 연금공단의 조사원(복지플래너)이 가구를 방문해 서비스지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공민간의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연계, 정보 제공 하도록 전달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 이용
- 시범사업*은 신규 및 기존 등록 장애인 2,565명 대상으로 서비스종합판정과 전달체계 개편 모형을 검증하고 실제로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지 확인
 - 조사대상 중 2,534명(98.8%)에게 주간활동, 장애인구강진료 등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정보를 제공
 - 기존 등록장애인의 소득지원, 건강의료, 문화여가, 고용, 주거 등 욕구 2,614건에 대하여 직접 서비스 연계 639건(24.4%), 정보제공 1,884건(72.1%)을 통해 96.5%의 욕구해소율을 보임
 - 이는 기존 자원을 기존 등록장애인의 욕구와 잘 연결한 결과로 종합판정 및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욕구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음을 확인

*기간 : '15. 6월~12월
해당지역 : 서울 노원구, 구로구, 인천 남구, 천안 시, 완주군, 부산 해운대구 6개 지자체

구분	서비스 종합판정	서비스 제공			서비스 미제공**
		합계	제공연계	정보제공	
인원(명)	2,565	2,534	1,600	934	31

** 미제공사유 :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준 미달 또는 부족

- 외부 설문조사 전문기관(지역개발연구원)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자 236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만족도 4.12점(5점 만점), 서비스 연계에 대한 만족도 4.41점 등 시범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수준임
- 보건복지부는 2016년 상반기에 1차 시범사업의 모형을 개선하여 하반기에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모형을 확정, 2017년 하반기에 전면 시행 예정
 - 보건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모형개선을 위하여 '15년 11월부터 '장애인맞춤형서비스지원체계 구축 추진단' 을 구성하고 서비스 지원조사표 개선, 전달체계 모형 다양화, 급여체계 개편(안) 마련 등을 추진
 - 시범사업 실무 준비를 위해 보건복지부내 '장애등급제 개편 실무추진단' 설치와 국민연금공단(2차 시범사업 실무TF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장애등급제 개편 지원팀)에 각각 실무팀을 구성하여 지침마련, 전산시스템 개편, 교육, 모니터링 등을 추진 예정

02 경기도에의 시사점

- 2차 시범사업에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사업 홍보와 지원
 - 경기도의 경우, 전국에서 장애인이 가장 많아 장애등급제개편에 따른 관련 업무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음
 - 중앙과 경기도 및 시군의 소통채널 마련과 시군에 대한 전문적 지원 필요
- 지자체가 신규 장애인복지서비스개발을 통해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교육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지방정부 주택정책, 주거복지 차원으로 확대개편 중

최근 주택정책 패러다임이 부동산 정책 등 주택시장에 대한 거시적 개입에서 점차 주거 안정성 및 주거의 질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으로 확대

- 주택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면서 정책 대상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까지로 확대되고, 주거복지에 대한 지방정부 역할이 새로이 강조되고 있음
 - 지난해 6월 정부는 주거권(housing right)을 명시한 「주거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주거복지에 대한 지방정부 역할이 강조되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보다 확대된 의미로서의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 이들 지방정부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광역 5곳·기초 4곳), 별도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음

〈표 1〉 주거복지 기본조례 지역별 비교

	경기도	인천시	대구시	광주시	세종시
제정 시기	14.05.02	13.02.21	13.05.16	13.02.15	14.02.17
기본계획수립	5년마다	5년마다	5년마다	5년마다	5년마다
주거실태조사	○	○	○	○	○
주거복지지원센터	×	○	○	○	×
	시흥시	성남시	전주시	천안시	
제정 시기	13.11.08	12.03.12	11.08.6	15.09.11	
기본계획수립	5년마다	5년마다	4년마다	5년마다	
주거실태조사	○	○	○	○	
주거복지지원센터	×	○	×	○	

- 그러나 아직까지 주거복지 정책은 장기적 비전 없이 주거 안정과 시장 활성화 논리가 대립하면서 실질적 주거복지 향상에 미치는 효과가 미흡
 - 현 정부 주거안정정책은 초기 주거 안정성 강화에서 이후 시장 활성화 기조로 전환되었고, 지방정부도 관련 정책이 뚜렷한 비전 없이 난립하는 등 주거복지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결여.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 정도는 정책 변화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 2014년 OECD가 발표한 지역별 웰빙수준 자료(1인당 방 수)에 의하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 주거행복지수는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경기도 주거실태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거비 부담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

〈표 2〉 경기도 권역별 주거관리비 부담 정도

		전혀 부담안됨(1)	별로 부담안됨(2)	약간 부담됨(3)	매우 부담됨(4)	평 균
경기 북부	도시형	0.9	19.9	50.0	29.2	3.8
	도농복합형	2.0	17.6	60.1	20.3	2.99
	농촌형	-	25.0	54.7	20.3	2.95
경기 남부	도시형	1.4	22.3	56.3	20.0	2.95
	도농복합형	2.2	23.8	51.2	22.9	2.95
	농촌형	-	4.7	39.8	55.5	3.51

*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5),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 향후 지방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 주거복지 비전 수립, 비전에 근거한 정책 설계, 예산 및 사업규모의 확대, 전달체계 확충 및 개편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

03 FACT CHECK

맞춤형 개별급여는 대상자 확대 목표를 맞췄나?

-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맞춤형 개별급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급여 대상의 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 복지사각지대 축소 등의 정책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 ① 최근의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신규 대상자 증가 효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있음' 으로 판단
 - 생계비 : 기존 최저생계비보다 기준중위소득 28%가 낮아 대상자 증대로 연결되지 않음
 -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30%에 대해 자기부담금 부과로 대상자 부담 발생으로 대상자 증대로 연결되지 않음
 - 교육급여 :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지 않아 대상자 증대로 연결되지 않음
 - ② 개별급여를 담당하는 기관이 다양해진 반면, 부처별 정보 공유 및 협력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이 어려움
 - 기존 : 보건복지부
 - 변경 : 보건복지부(생계·의료·자활급여), 국토교통부(주거급여), 교육부(교육급여)
 - ③ 셋째, 관리부서는 나뉘져 있으나 신청은 읍면동에서 수행하며, 제도 초기 신청건수 중심의 실적 독려로 복지업무 담당자의 업무가 과중
-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보완 및 개선이 필요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재산기준, 소득인정액제도 변화)와 지역사회내 맞춤형개별급여제도와 관련된 기관들과의 협업구조 마련 등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04 통계로 보는 복지

등록장애인 현황

인구대비 등록장애인 비율 장애등급별 등록장애인 수 경기도 장애인 유형별 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2014.

- 2014년 등록장애인은 전체 인구 대비 4.86%이며, 지역별로는 서울(3.95%), 경기(4.11%)가 낮고 전남(7.51%), 전북(7.00%)이 높은 편임
 - 등록장애인 중 1급은 19만9천 명(8.0%)이며, 2급은 33만6천 명(13.5%)이 해당
- 경기도의 장애인은 50만8천 명이며, 이 중 지체장애인이 26만9천 명(52.9%)으로 가장 많고, 뇌병변(약 5만2천 명, 10.2%), 시각(5만 명, 9.9%), 청각(4만7천 명, 9.3%), 지적(3만7천 명, 7.2%) 등의 순임
 - 연도별로 볼 때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은 증가 추세에 있음

**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며, 뇌병변·시각·지적 등 일부유형은 3급도 인정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유형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심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의 15가지